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4
------	-----

2009년 2월 20일  
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2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교통위원회(2009년 2월 2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교통소통대책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소통대책으로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주요 개정사항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09년 1월 30일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54호로 2009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동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검토의견

- ▷ CCTV 설치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안 제4조제2항제6호).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공사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방안으로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을 신설하고 있는 바, 서울시내에서 연간 시행되는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 상·하수도 공사, 전력 공사 등이 1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공사지점에 대한 CCTV 임대설치를 통해 공사현장을 24시간 감시토록 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에 따른 시민불편 및 교통혼잡을 신속한 시간내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 ▷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운영방안 관련 조항 신설 등에 대한 의견(안 제9조제1항 및 제6항).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및 의결요건으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자문회의 운영방식을 조

례에 명문화시켜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자문회의가 심의·의결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안 제9조제1항 및 제6항) "자문회의"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됨.

- ▷ 점용기간 20일 이하인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업무의 위임에 대한 의견(안 제12조).
  - 동 개정조례안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2006년 8월부터 부시장방침(교통운영담당관-6237)에 근거해 구청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방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개별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대책수립과 같은 중요한 사무위임 사항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조례에 담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 기타 상위법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반영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임.

이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법제처에서 제시한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운용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